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경제 형벌 정부과제에 따른 경제 형벌규정 개선〉
■ 김원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152호)

2026. 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총괄 검토	3
2. 조문별 검토	5
가.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실외이동로봇 개조	5
나.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실외이동로봇에 안전인증 표시	7
다. 책임보험등 미가입	9
※ 참고자료	12
1.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	1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원이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6. 1. 19.
3. 회 부 일 : 2026. 1.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안전인증 받은 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실외이동로봇을 판매 또는 운행 목적으로 개조한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실외이동로봇에 안전인증 표시를 한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실외이동로봇 운영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Ⅲ. 검토의견

1. 총괄 검토

최근 구체적인 법익 침해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규정이 과도하여 민간의 경제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정부는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하고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출범('25.8.)하여 경제 형벌규정의 개선을 진행하고 있음¹⁾.

이에 개정안은 ①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실외이동로봇을 판매 또는 운영을 목적으로 개조한 경우와 ②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실외이동로봇에 안전인증 표시를 한 경우 및 ③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형벌을 과징금 혹은 과태료로 전환함으로써, 경제형벌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는 형벌규정 합리화를 통해 민간의 경제활동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임.

1) 정부의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은 참고자료 1 참조

[경제 형벌규정 개선 대상 및 주요 내용]

대상	유형	개정 내용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실외이동로 붓을 판매 또는 운행 목적으로 개조	과징금 전환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개정) 5천만원 이하 과징금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실외이동로 붓에 안전인증 표시	과태료 전환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개정)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함	과태료 전환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개정) 1천만원 이하 과태료

2. 조문별 검토

가.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실외이동로봇 개조

개정안은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실외이동로봇을 판매 또는 운행을 목적으로 개조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던 것을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함(제40조의2제8항 및 제9항 신설 등).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0조의2(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 등) ① ~ ⑦ (생략) <u><신설></u>	제40조의2(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u>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실외이동로봇을 판매 또는 운행을 목적으로 개조한 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u>
<u><신설></u>	⑨ <u>제8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47조(벌칙) ① 삭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4. <u>제40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실외이동로봇을</u>	제47조(벌칙) ② ----- ----- -----. 1. ~ 3. (현행과 같음) <삭제>

판매 또는 운행을 목적으로 개조한 자	
-------------------------	--

현행법은 실외이동로봇의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인증을 받도록 하고(제40조의2제3항), 이를 위반하여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실외이동로봇을 판매 또는 운행을 목적으로 개조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제47조제2항제4호)²⁾.

그런데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실외이동로봇을 ‘개조’한 상태만으로는 구체적인 법익 침해나 생명 등에 대한 위해가 구체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형벌규정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개정안은 사업주의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형벌이 아닌 부당이득 환수 및 의무이행 확보를 위한 제재수단인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기업의 위법행위 억제를 위해 과징금의 한도를 기존 벌금(3천만원) 대비 상향한 5천만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바람직한 취지로 보임.

2)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0조의2(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실외이동로봇의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등에서의 운행을 위하여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40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실외이동로봇을 판매 또는 운행을 목적으로 개조한 자

나.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실외이동로봇에 안전인증 표시

개정안은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실외이동로봇에 안전인증 표시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던 것을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변경함(제49조제1항 신설 등).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7조(벌칙) ① 삭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5. 제40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실외이동로봇에 안전인증 표시를 한 자 6. (생략)	제47조(벌칙) ② ----- ----- -----. 1. ~ 3. (현행과 같음) <삭제> 6. (현행과 같음)
제49조(과태료) <신설>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제49조(과태료) ① 제40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실외이동로봇에 안전인증 표시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현행 제1항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 -----.

현행법은 실외이동로봇의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실외이동로

봇에 안전인증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제40조의2제5항), 이를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실외이동로봇에 안전인증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제47조제2항제5호)³⁾.

다만, 안전인증 자체가 아닌 안전인증의 ‘표시’와 같이 보행자 등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닌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형벌 대신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경제 형벌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실외이동로봇에 안전인증 표시를 한 경우 형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여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지 않는 단순 행정상 의무위반행위를 비범죄화하려는 것임.

개정안과 같이 경제 형벌규정을 완화하는 경우, 규정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제재 효과는 유지하면서 민간 경제활동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0조의2(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실외이동로봇의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등에서의 운행을 위하여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안전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0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실외이동로봇에 안전인증 표시를 한 자

다. 책임보험등 미가입

개정안은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던 것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변경함(제49조제2항 신설 등).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7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 삭제 3. (생략) 4. 제40조의4를 위반하여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제47조(벌칙) ③ ----- ----- -----.
제49조(과태료) <u><신설></u>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제49조(과태료) ② 제40조의4를 위반하여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현행 제1항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 -----.

현행법은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도록 하고(제40조의4), 이를 위반하여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제47조제3항제4호)4).

그런데 책임보험 미가입은 안전인증의 부수적 의무 불이행에 불과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유사 입법례를 고려할 때5),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 운영자의 책임보험등 미가입에 대하여도 행정형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경제형벌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개정안은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단순 행정

4)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0조의4(보험 등 가입 의무)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등에서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7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40조의4를 위반하여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7조(보험가입)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가스용품을 수입한 자, 제3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시설의 시공자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52조에 따른 공제사업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3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8.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의3(손해배상책임 및 보험 가입) 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보존 또는 관리로 인한 화재 등으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2. 제21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상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함으로써 민간의 경제 활동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문 의 처
02)6788-5464

참고

1.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⁶⁾

I 추진 배경

- 과도한 경제형벌로 인해 민간의 창의적인 경제활동이 제약
 - 책임 소재와 관계없이 사업주를 처벌대상으로 판단하여 기업 활동이 위축*, 소비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는 미흡
 - 민생의 중심인 자영업자·저소득층의 경우 형벌규정 미인지, 오인, 단순신고 누락 등으로 처벌받는 사례도 존재
- 전부처 경제형벌 규정의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해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출범·운영(25.8.1.~), 자체 개선과제 발굴 중

II 추진 방향

- 1년 내 전부처 소관법률 중 형벌 관련 규정 30%^{목표} 정비
→ 부처별로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연내 개선안 마련 추진
- ①사업주의 형사처벌 리스크를 해소하고, ②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국민의 민생경제 부담을 완화하도록 제도 개선
 - ① 배임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양벌규정 정비 등 선의의 사업주에 대한 면책규정을 도입
 - ② 형벌이 아닌, 징벌적 과징금 또는 손해배상 등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여 기업 위법행위를 실효적으로 억제
 - ③ 대체로 생활밀착형인 국민의 경미한 의무위반 사항에 대해 형벌 보다는 행정제재인 과태료로 전환
 - ④ 시정명령·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조치를 통해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先행정조치-後형벌부과”로 전환

◇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우선 신속 추진이 가능한 기업·국민 현장체감형 과제를 1차로 마련·발표

6) 자료 : 산업통상부